

의안번호	2200431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4. 7. 5.
추계번호	24B0837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조 333억원, 2030년 14조 8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조 504억원(연평균 13조 101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
- (지방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당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12조), 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안 제17조), 비용의 분담(안 제27조) - 농어민수당 지급	120,333	125,140	129,932	135,018	140,080	650,504	130,101
국비(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지방비(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주: 1,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3% 수준으로 가정
 2,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3, 농어민수당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24년 기준 32%)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
 4,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농어민수당위원회 구성 등)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1항) 1. 농어민수당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3. 농어민수당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민수당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농어민수당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농어민수당정책조정실무위원회</u>(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u>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u> 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u>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농어민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함(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어업종사자</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u>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5조(자료 조사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7	안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u>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0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함. 다만, 농어민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제1항)</u> <u>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음(제2항)</u> <u>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제3항)</u>	의무·재량 규정
8	안 제27조(비용의 부담)	<u>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함(제1항)</u> <u>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이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u>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농어민수당위원회의 구성 등)	—	• 미대상 －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수당위원회 및 농어민수당 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국무총리실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도별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17개 시·도의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안 제7조(위원회의 업무 등)																						
4	안 제11조(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5	안 제12조(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	• 농어민수당 비용추계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																				
7	안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8	안 제27조(비용의 부담)																						
6	안 제15조(자료 조사 등)	—	• 미대상 －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현행 사업 실시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또는 수급자)는 농어업경영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조사원 운영 및 관련 정보 관리, 공익직불금(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관련 현장점검 등의 사업 수행중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농업경영체등록(6034-362)</td><td>26,655</td><td>27,825</td><td>28,979</td></tr> <tr> <td>－등록조사원 운영</td><td>20,493</td><td>21,396</td><td>22,373</td></tr> <tr> <td>－등록정보관리</td><td>4,616</td><td>4,803</td><td>4,980</td></tr> <tr> <td>－정확도관리</td><td>1,546</td><td>1,626</td><td>1,626</td></tr> </tbody> </table>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업경영체등록(6034-362)	26,655	27,825	28,979	－등록조사원 운영	20,493	21,396	22,373	－등록정보관리	4,616	4,803	4,980	－정확도관리	1,546	1,626	1,626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업경영체등록(6034-362)	26,655	27,825	28,979																				
－등록조사원 운영	20,493	21,396	22,373																				
－등록정보관리	4,616	4,803	4,980																				
－정확도관리	1,546	1,626	1,626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240	4,417	4,213
			-어업경영체 등록	4,240	4,417	4,213
			-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	300	—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1,603	25,054	28,421
			-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지원	13,726	16,637	19,173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	726	909	1,006
			-준수사항 관련 업 무추진 및 부정수 급 방지	6,651	7,508	8,182
			-실태조사 용역비	500	—	—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3,066	2,824	2,7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7조제2항¹⁾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매년 공표되는 ‘1인가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²⁾에 따라 공표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발표중이며, 농어민의 삶의 질

1) 안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어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1인가구 선정기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각 생계급여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³⁾을 차감하여 산출⁴⁾되나,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의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으므로 ‘월 생계급여 1인가구 선정기준 금액’의 절반 이상을 농어민수당 지급월액으로 가정하는 것임

[표 2]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준

(단위: 금액(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¹⁾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주: 1)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8.16. 공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 략)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text{소득인정액}$$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8.16. 공표 2024.1.1. 시행)

-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의 총액(기준선)을 비용추계 결과값에서 차감하지 않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중이나, 총 지급액 및 지급대상(개인 또는 가구), 지급시기 등이 상이하여 추계에 필요한 자료 가공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은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참고
- 본 추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종사자)로 한정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지칭하며, 각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지칭함
 - 여기서 다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지칭함

[표 3] 농어업경영체의 구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구분			정의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임업 포함)		농업인 +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어업경영체			어업인 + 어업법인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어업인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어업회사법인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안 제12조제1항제1·2호는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의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어 농어업인 외에 ‘농어업법인(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어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⁵⁾만을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의 자격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농어업법인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농어업법인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은 농어민수당 지급 정지 사유, 수급권 상실 사유, 수당의 환수⁶⁾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가 부재하여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농어민수당 수급자 중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직불금·수산직불금 등의 부정수급자, 국적상실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

5) [참고자료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수 참고

6) 안 제19조(수당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신청 직전연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직전연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4.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 제20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수당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안 제21조(수당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산출

- 최근 6년(2019~2024.5월)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임산물 생산·채취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구분없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며,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농업인과 별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시작함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됨
 - 예를 들어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과 어업인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함

[표 4] 농업경영체(농업·임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2019~2024년 5월말

(2024년 5월 말 기준, 단위: 명)

소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소계	2,446,568	2,478,680	2,571,670	2,554,638	2,554,935	2,538,006
			경영주	1,686,068	1,730,905	1,762,530	1,811,377	1,822,483	1,808,925
			경영주 외 농업인	760,500	747,775	745,140	743,261	732,452	729,081
		임업인 (산림청)	소계	3,812	8,662	13,409	65,160	67,901	68,996
			경영주	2,665	6,072	9,532	44,705	46,891	47,815
			경영주 외 농업인	1,147	2,590	3,877	20,455	21,010	21,181
해양 수산부	어업 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계	81,798	86,320	89,332	92,890	95,407	94,295
			경영주	70,073	73,198	74,874	76,979	78,698	77,494
			경영주 외 종사자	11,725	13,122	14,458	15,911	16,709	16,801

주: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된 것임

2. 임업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2020~2024.5월말)간 총인구 수 대비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각 경영체 수를 산출

- 최근 5년(2020~2024.5월말)간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 5.03% 산출
 - 이때, 농어민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중복 등록된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의 수를 제거함⁷⁾

[표 5]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수(중복제거) 평균 비율: 2019~2024.5월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총 인구(A)		51,836,239	51,769,539	51,672,569	51,712,619	51,751,065	51,748,406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종사자)	농업인(B)	2,478,680	2,571,670	2,554,638	2,554,935	2,538,006	2,539,586
	임업인(C) ¹⁾	8,662	13,409	65,160	67,901	68,996	44,826
	- 농업인 및 임업 인 중복등록자 (D)	5,998	8,888	53,570	55,211	55,706	35,875
	어업인(E)	86,320	89,332	92,890	95,407	94,295	91,649
	- 농업인 및 어업 인 중복등록자 (F) ²⁾	34,456 ³⁾	35,749 ³⁾	35,512 ³⁾	35,516²⁾	35,281 ³⁾	35,303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중복 제거) (I=(B+C+E)-(D+F))	2,533,208	2,629,774	2,623,606	2,627,516	2,610,310	2,604,883
총 인구 대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비율(J=I/A)		4.89%	5.08%	5.08%	5.08%	5.04%	5.03%

주: 1) 임업인의 경우 '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2)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것임(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협업)

3) 2020~2022년 및 2024년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년 기준 농업인 등록자(2,554,935명)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35,516명)의 비율(1.39%)를 각 연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7) 다만, 어업인과 임업인 간 중복자 수는 자료의 한계로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임업과 어업에 중복하여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발표된 총 인구 수에 5.03%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산출함

[표 6]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산출: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인구(A, 명)	51,609,121	51,534,551	51,459,877	51,384,052	51,305,713
총인구 대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비율(B)	5.03%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C=A×B, 명)	2,597,872	2,594,119	2,590,360	2,586,543	2,582,599

주: 최근 5년(2020~2024.5월말)간 총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중복 제거)의 평균 비율(5.03%)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농어민수당 지급 단가

- 농어민수당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월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 즉 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32%(2024년 기준)로 가정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지므로, 추계기간 동안 최근 10년(2015~2024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4.0%를 적용함

[표 7]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추이: 2015~2024년

(단위: 원/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B)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C=A×B)
2015	1,562,337	28%	437,454
2016	1,624,831	29%	471,201
2017	1,652,931	30%	495,879
2018	1,672,105	30%	501,632
2019	1,707,008	30%	512,102
2020	1,757,194	30%	527,158
2021	1,827,831	30%	548,349
2022	1,944,812	30%	583,444
2023	2,077,892	30%	623,368
2024	2,228,445	32%	713,102
연평균 증가율	4.0%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하여 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산출하 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50%) 및 지급개월(12개월) 수를 곱하여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를 산출함
 - 이때, 농어민수당이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농어민수당 지급단가의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천원 단위로 표시)함

[표 8]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산출: 2025~2030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¹⁾ (A, 원/월)	2,318,132	2,411,429	2,508,481	2,609,439	2,714,460	2,823,708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 ²⁾ (B, %)	32%	32%	32%	32%	32%	32%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C=A×B, 원/월)	741,802	771,657	802,713	835,020	868,627	903,586
월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³⁾ (D=C×50%, 천원/월)	371	386	402	418	435	452
지급개월 수 (E, 월)	12	12	12	12	12	12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F=D×E, 천원/년)	4,452	4,632	4,824	5,016	5,220	5,424

주: 1)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2015~2024년 연평균 증가율 4.0%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32%(2024년 기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월 농어민수당 지급단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분담률 등

□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함

- 안 제27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 지원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분담률을 알 수 없으므로 국비 대 지방비의 분담률을 50:50으로 가정함

라.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조 504억원(연평균 13조 101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
- (지방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

[표 9] 농어민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천명,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598	2,594	2,590	2,587	2,583	—	—
연간 지급액 (B, 백만원)	4.6	4.8	5.0	5.2	5.4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120,333	125,140	129,932	135,018	140,080	650,504	130,101
국비 (D=C×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지방비 (E=C×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주: 1)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3% 수준으로 가정

2)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3) 농어민수당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24년 기준 32%)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

4)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4년 6월 기준)

구분	지자체	지급 시작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농업인 수당	경기도	'21~	농업인	'21년~: 농업인당 5만원/월 (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22~	농가	'22년: 농가당 50만원/년 '23~: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20~	농업인	'20~'21년: 농가당 80만원/년 '22년~: 1인 농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지역화폐
	전라북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전라남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북도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남도	'22~	농가	농가당 30만원/년 (공동경영주 60만원/년)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신용·체크카드)
	제주도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년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24~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어업인 수당	인천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현금, 지역화폐 (카드, 상품권 등)
	경기(화성시)	'23	어민	어민당 60만원/년	
	전라북도	'21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전라남도	'20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북도	'23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남도	'20	어가	1인 어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1인	
	강원도	'21	어가	어가당 70만원/년	
	경상북도	'22	어가	가구당 60만원/년	
	경상남도	'22	어민	경영주당 30만원/년	
	울산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제주도	'22	어민	어민당 40만원/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

[참고자료 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월 기준)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 업종사자 ¹⁾	112,644	119,120	120,328	123,190	— (발표 전)	— (발표 전)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어 업종사자	513	1,240	2,490	2,917	3,132	3,196

주: 1) 상기 연도별 농업종사자 수치는 「농업법인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라 상시근로자(상근출자자+상용근로자) 수입

— (상근출자자) 출자자 중에서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한 해동안 1년 이상 계속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출자자를 말함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 직원을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